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2004. 7.14  
제출자:고응중의원외 6인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4년 7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## 3. 참고사항 : 없 음

# 심 사 계 획

## 1. 활 동 목 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심 사 안 건

-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-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
-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
-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3. 활 동 기 간

- 2004년 7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중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, 김영해의원

## 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7.21(수)	제1차조특 (10:00)	1.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.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.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6.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.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8.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.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	